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3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병도, 강대호,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양민규,
유정희, 이경선,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행동 규제로 인해 물리적 이동과 관계적 소통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나 국내 디지털 전환 적극 실행기업은 9.7%에 불과하고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됨.
-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서울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 용어 정의(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함
(안 제4조제7호 신설).

다.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산업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 전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u></p>
<p>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p>	<p>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 -----</p>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 전환 지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1101200000026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병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의 실태조사, 제7조제1항의 창업 및 기술지원 대상에 디지털 전환 사업이 추가되어 비용발생
 - 제7조제1항제3호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 대상 사업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원 규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제5조제1항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60,000천원으로 연평균 5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5조제1항 디지털전환 실태조사는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중소기업단체협력강화/중소기업현황 실태조사 예산(경제정책과)을 참고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 5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260,000천원(연평균 52,000천원)
- 실태조사 실시 비용 ≙ 260,000천원
 - 연간 실태조사 실시 비용 = 260,000천원
 - 중소기업단체협력강화/중소기업현황 실태조사 예산(경제정책과) : 260,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
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